

【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】

◆ 계약기간

-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

◆ 계약목적

- 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.
- 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◆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① 월 이용료

1. 월 이용료는 <별표1>과 같으며,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.
2. 주간보호 서비스를 월 15일 이상 이용할 경우(1일 8시간 이상) 월 120% 한도액 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.

② 본인부담금

1. 본인부담금은 <별표1>과 같으며,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.

③ 그 밖의 비용부담액

1. 비급여 항목(식사재료비,기저귀비용)은 <별표1>과 같으며,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(보호자)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.
2.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3.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%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1. 권리

- 가. 이용자의 건강상태,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나.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
- 다.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
- 라.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,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2. 의무

- 가.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
- 나.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비급여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 의무
- 다. 건강상태 이상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

- 라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
- 마.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등급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

◆ 계약의 해제

-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.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 - 2.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- 3. 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
 - 4.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,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.
 - 1.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
 - 2.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 - 3.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 - 4.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
 - 5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

<별표1>

○ 2024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

(단위 : 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,069,900	1,869,600	1,455,800	1,341,800	1,151,600	643,700

○ 2024년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장기요양수가

(단위 : 원)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3시간이상~6시간미만	39,810	36,850	34,020	32,470	30,920	30,920
6시간이상~8시간미만	53,360	49,420	45,620	44,070	42,500	42,500
8시간이상~10시간미만	66,360	61,480	56,760	55,210	53,640	53,640
10시간이상~13시간미만	73,110	67,720	62,570	61,000	59,450	53,640
13시간초과	78,400	72,630	67,100	65,540	63,990	53,640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.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6% 또는 9%

○ 비급여항목

비급여 항목	금액
식사재료비	1식당 2,700원